

행정처분의 기준(제4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,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(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)하여야 하며, 면허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취소를 하여야 한다.
- 마.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 거 법 령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5조 제1항 제1호	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	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	면허 또는 자격취소
나.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	법 제55조 제1항 제1호	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	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	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

지 아니한 경우				
다.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				
1) 응급의료종사자	법 제55조 제 1 항 제 1 호	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	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	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
2)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라.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 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2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마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 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				
1) 응급의료종사자	법 제55조 제 1 항 제 2 호	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	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	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
2)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	법 제55조 제 3 항 제 3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바.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 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응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
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경우				
사.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아.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	법 제55조 제 1 항 제 3 호	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	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	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
자.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차.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4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카.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(종합병원은 제외한다)이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·운영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타.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	법 제55조 제 1 항 제 3 호의2	자격취소		
파.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	법 제55조 제 1 항 제 4	자격취소		

우 하.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 장비,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 약품의 관리·운용과 응급구조 사의 복장·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·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호 법 제55조 제 1 항 제 1 호	자격정지 7일	자격정지 15일	자격정지 1개월
거. 응급구조사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	법 제55조 제 1 항 제 1 호	자격정지 1개월	자격정지 2개월	자격정지 3개월
너.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 치를 행한 경우	법 제55조 제 1 항 제 5 호	자격정지 15일	자격정지 1개월	자격정지 2개월
더.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 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 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1 항 제 6 호	시정명령	자격정지 15일	자격정지 1개월
러.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 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구 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시정명령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5일
머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버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	영업허가 취소

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저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구급차등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	호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어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저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,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처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않거나,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·보관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·변조한 것으로 보관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커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터. 응급구조사(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다)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	법 제55조 제 1 항 제 1 호	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	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	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

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			
퍼.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 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허.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 49조제2항·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이거나 조작 또는 위조·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· 제6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고.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(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)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노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5 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	영업허가 취소
도.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·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로.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	법 제55조 제 3 항 제 1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
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호			
모.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,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보.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소.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오.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조.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·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
초.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	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	시정명령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5일

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			
코. 의료기관(이 법에 따라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,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)이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	법 제55조 제3항 제1호	시정명령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5일